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3, No. 128, pp.249-298
<https://doi.org/10.29212/mh.2023..128.249>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정전회담에 있어서 참모장교 회의의 역할*

김정훈 | 육군학생군사학교 경상국립대학교 학군단 훈육관

- 목 차
1. 서론
 2. 정전감시방법 논의 쟁점사항
 3. 정전감시대상 결정 논의
 4. 정전감시방법 결정 논의
 5. 결론

초 록 이 연구는 정전회담 기간 중 1951년 11월부터 1952년 4월까지 진행된 참모장교 회의의 중요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제3 의제인 정전감시방법 및 그 기구 설치에 관한 의제를 중심으로 정전회담 과정에서 참모장교 회의의 역할, 참모장교 회의가 정전회담에 기여한 성과를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참모장교 회의가 정전협정을 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단편적인 결과만을 다루었다. 또한, 기존 연구는 정전협정이

체결되는 지도부의 결정 과정이나 현재에도 문제가 되는 제2 의제 군사분계선 설정과 제4 의제 포로에 관한 협의에 관한 항목에만 주목하고 있다. 제2 의제에서 해결하지 못한 해양 영역에 관한 논의도 제3 의제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제4 의제인 포로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제3 의제 관련 문제와 함께 엮어서 논의하였다. 제3 의제 논의가 중요하지만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중에서도 참모장교 회의가 제3 의제 정전회담에서 발생한 쟁점 사항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주목받지 못하였다. 물론 스탈린의 죽음이 해결된 가장 큰 이유였지만, 참모장교 회의의 역할이 없었다면 스탈린의 죽음 이후로도 정전협정이 체결되려면 더 오랜 시간이 걸렸거나 협정문의 완성도가 떨어졌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전회담 회의록을 중심으로 제3 의제 정전회담 쟁점사항이 어떤 것이고 서로가 무엇을 주장하고 어떤 것을 원했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3 의제 논의에서 쟁점이 되었던 항목을 구분하여 각 항목들에 대한 합의가능영역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유엔군과 공산군 대표단의 끊임없는 회의를 통해 참모장교 회의가 정전협정 체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6·25전쟁 정전회담, 참모장교 회의, 제3 의제, 정전감시방법, 정전감시대상

(원고투고일 : 2023. 4. 9, 심사수정일 : 2023. 8. 15, 게재확정일 : 2023. 8. 29.)

1. 서 론

정전회담은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한 지 1년 만에 시작되었고, 정전회담이 시작된 지 2년 만에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정전회담 간 유엔군과 공산군 대표는 협상 과정에서 서로가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의 문제로 충돌하였다. 쌍방은 모두 감내할 수 없는 희생을 바탕으로 협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쉽게 양보하지 않았다. 이들은 정전회담이 시작된 지 16일이 지나서야 어떤 의제를 논의할 것인지 결정하였다. 총 5개 의제로 제1 의제는 의제의 결정, 제2 의제는 군사분계선 설정, 제3 의제는 정전감시방법 및 그 기구의 설치, 제4 의제는 포로에 관한 협의, 제5 의제는 쌍방의 관계 제국 정부에 관한 건의로 결정되었다.¹⁾ 이후 진행된 정전회담에서 유엔군과 공산군의 협상 대표자가 참석하는 본회의에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유엔군과 공산군은 분과위원회 회의, 참모장교 회의, 연락장교 회의를 개최하여 협상을 진행하였다.

본회의는 최고 결정기관으로 모든 회의에서 준비되고 합의한 사항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의하며 그 결과를 공식화하였다. 분과위원회 회의는 1951년 8월 15일 제2 의제 본회의에서 신속한 타결을 위해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할 수 있는 회의를 만들자는 유엔군의 주장에 의해 만들어졌다.²⁾ 참모장교 회의는

* 이 논문은 필자의 석사학위논문(『6·25전쟁 정전회담 간 참모장교회의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석사학위논문, 2023)의 내용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한 것임.

1) 국사편찬위원회, 『남북한관계사료집』 1권(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94), p. 4.

2) *Ibid.*, pp. 408-421.

본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합의되거나 합의되지 못한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연락장교 회의는 본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다루는 협상 기구의 역할이 필요하여 만들어졌다.

이때 참모장교 회의는 본회의를 준비하는 역할, 협정문의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역할, 합의문 문구의 의미를 하나씩 따져가며 결정하는 역할, 타결되지 못한 부분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참모장교 회의는 고착된 정전회담 과정에서 정전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왜 자신의 주장대로 해야 하는지, 상대방의 주장이 왜 맞지 않는지 등의 의견을 주고받으며 다양한 제안을 제시하였다.

참모장교 회의는 정전회담 5개 의제 중 제3 의제 정전회담에서 해결되지 않을 것 같던 문제를 해결하며 정전협정이 체결되도록 도왔다. 제3 의제는 정전감시방법 및 그 기구의 설치 논의였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감시를 진행할지, 누가 감시를 수행할지, 감시를 수행하는 기구의 권한과 기능 등의 사항을 결정해야 하였다. 그리고 이 논의에 앞서 감시의 대상이 되는 항목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하였다. 즉, 군사분계선에서의 군사적 충돌에 대한 감시뿐 아니라 정전을 안정되게 유지하기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병력, 무기 등 군사력을 감소시켜 나갈지, 증가만 제한하고 교체를 허용할지 결정해야 하였다. 또한, 제2 의제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해양 영역 논의를 확실히 해결해야 정전협정 사항을 위반했는지 알 수 있었다.

제3 의제는 5개 의제 중 어떤 의제보다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항목이 많았다. 또한 결정해야 할 항목이 많은 제3 의제에서 유엔군과 공산군의 협상 과정은 원활하지 않았지만, 참모장교 회의가 고착된 문제들을 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전회담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정전회담 지도부 정책 결정 과정, 주

로 제2·4 의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제3 의제에 관한 연구와 참모장교 회의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허미스(Walter G. Hermes)는 6·25전쟁 정전회담에서 미 합참의 입장과 리지웨이(Matthew Bunker Ridgway, 1895-1993) 장군, 조이(Charles Turner Joy, 1895-1956) 제독의 생각과 주장을 잘 정리하며 미국 내 갈등을 보여주었고, 특히 전황과 연계하여 기술하며 정전회담 과정을 분석하였다.³⁾ 슈나벨(James F. Schnabel)은 정전회담 시기에 진행된 설전과 열전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고 특히, 정전회담의 경과와 교착된 전선에서 큰 희생을 치르며 전개한 적대행위의 실상, 정전협정과 전후 처리상황을 군사정책적 시각에서 자세히 분석하였다.⁴⁾

김보영은 정전회담을 통해 6·25전쟁을 재조명하였고 전 과정을 세밀히 검토하며 유엔군과 공산군의 협상 전략과 협상 주체, 남북한의 지위 문제, 전후 정전체제 구상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고⁵⁾ 특히, 문제의 원인과 실무회의를 포함하여 정전회담의 과정을 치밀하게 분석하였다. 김명섭은 정전회담의 막전막후에 존재했던 인간들의 관념적 차이가 정전회담의 지연과 정전체제의 탄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고,⁶⁾ 특히 정전회담의 배경부터 지휘체계, 협상단 인물의 특징, 각 의제별 논쟁 사항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3)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Washington D.C: United States Army, 1988).

4)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stson, *The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te, Vol. III The Korean War Part II* (Washington D.C.: Historical Division Joint Secretariat Joint Chiefs of Staff, 1979).

5) 김보영, “한국전쟁 휴전회담 연구”, 한양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8.

6) 김명섭,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2015).

그 외에도 유엔군과 공산군 지도부 회의 내용과 지침, 국제적 상황, 대외정책 등을 연계하여 정전회담 과정을 분석한 연구가 있었지만⁷⁾, 정전회담 과정 간 참모장교 회의에서 논의했던 내용이나 참모장교 회의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분석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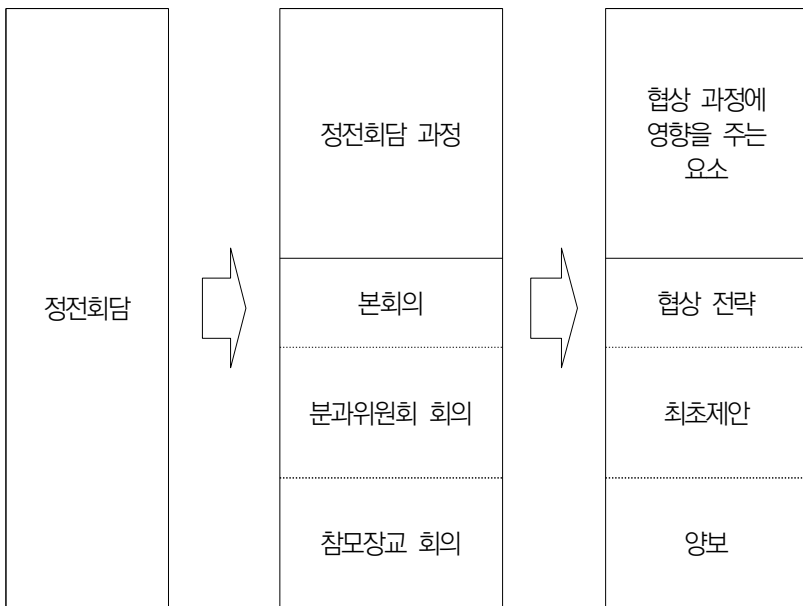
제3 의제는 기존 연구에서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고 전체 정전회담 과정에서 일부 다루어질 뿐이었다. 제3 의제에서 진행되었던 참모장교 회의를 분석한다면 해결되지 않던 협상을 풀어나간 참모장교 회의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를 규명하여 정전회담의 과정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제3 의제, 특히 참모장교 회의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참모장교 회의가 정전회담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무엇을 논의했는지, 정전회담에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의 방법을 사용한다. 문헌은 1차 사료인 『남북한관계사료집』과 『미국의 대외 관계,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를 중점적으로 활용한다. 연구 범위는 제3 의제가 시작되는 1951년 11월 27일부터 제3 의제 참모장교 회의가 끝나는 1952년 4월 2일까지를 그 범위로 한다. 또한, 정전회담 협상 과정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듀퐁(Christophe Dupont)과 포레(Guy-Olivier Faure)가 제시한 협상 과정에 영

7) Matthew B. Ridgway, *The Korean War*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67); 조이, 『공산주의자는 어떻게 협상하는가?』, 김홍열 역(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3); 윌리엄 스톡, 『한국전쟁의 국제사』, 김형인 역(서울: 푸른역사, 2001); Rosemary Foot, *A Substitute For Victory: The politics of Peacemaking at the Korean Armistice talks*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90); 양쿠이승, “중국군의 정전협상전략”, 『6·25전쟁 50주년기념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pp. 515-555; 김학준, 『한국전쟁: 원인, 과정, 휴전, 영향』 (서울: 박영사, 2010), pp. 307-371.

향을 주는 요소를 활용하여 분석할 것이다.⁸⁾ 협상 과정에 관한 연구는 협상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과 사회적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협상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3가지로 협상가의 활동이나 협상가가 지닌 문화와 대화 방법, 그리고 협상가가 지닌 기타 참조 요인이 있다. <표 1>과 같이 3가지 요소를 활용하여 6·25전쟁 정전회담에서 유엔군과 공산군, 지도부와 협상단의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일련의 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표 1> 협상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



8) Victor A. Kremeyuk et al., *International Negoti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2013), pp.39-63; 허만호, “6·25전쟁 휴전회담 분석”, 『국제정치논총』 53, 4(2019), pp. 113-163.

먼저 협상가의 활동은 협상 전략⁹⁾, 최초제안¹⁰⁾, 양보¹¹⁾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상 목적에 따라 협상 전략을 어떻게 결정할지, 최초제안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제시할지, 양보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지를 결정한다. 다음 협상가가 지닌 문화¹²⁾와 대화 방

-
- 9) 협상 전략은 화해 혹은 문제해결전략, 대립전략, 혼합전략, TFT전략, 굴복전략으로 분류된다. 화해 혹은 문제해결전략은 대립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명하지 못하고, 굴복할 상황이 아니나 협상을 지연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클 때 채택된다. 대립전략은 욕구가 강하거나 감정의 골이 깊을 때,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이 강할 때, 협상대안의 폭이 좁을 때, 지명권자에 대한 책임감이 강할 때나 지명권자의 엄격한 감독을 받을 때, 상대방과의 열망수준이 현격한 차이가 날 때, 협상이 영합의 특성을 가질 때 택하는 전략이다. 혼합전략은 복잡한 협상에서 요구되나 이전 자신이 주장하던 입장과 다른 입장을 주장하는 정반대 전술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협상가 자신의 입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때 대립전략에서 화해전략으로 변경하는 형태를 취하는 순차 전술과 공격으로 대립전략을 취하면서 실제로 화해전략을 추구하는 양면 전술, 핵심적 이해에 대해서 확고히 언명하지만, 실현 방법에서 융통성을 보이는 융통성 전술이 있다. TFT전략은 혼합전략의 변형으로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나의 대응을 조절하는 전략으로 상대방의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유효한 전략이다. 굴복전략은 지연의 비용이 엄청 나거나 재난이 예상되고 시한이 임박했을 때 채택하는 전략이다. Victor A. Kremeyuk et al., *International Negotiation*, pp.45-47; 허만호, 『6·25전쟁 휴전 회담과 역사적 유제들』 (경기: 한국학술정보, 2017), pp. 28-30.
- 10) 최초제안은 협상가들이 앞으로 협상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과 기본적인 협상 입장에 영향을 주는 수단이다. 협상에서 적게 내어주려는, 즉 양보를 덜한 제안을 제시하는 것은 다른 협상가의 열망 수준을 감소시킨다. 때로는 극단적인 요구로 협상을 시작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한다. 그러나 극단적인 요구 혹은 아주 적게 요구하는 것 모두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이는 누군가에게 양보할 가능성을 거의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매우 높은 요구는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그 이유는 다른 협상자가 공정한 합의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거나 그 요구를 심각한 제안으로 아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 11) 양보는 협상 과정의 핵심이며 동적(dynamic)인 요소이다. 협상가는 합의를 위해 양보를 많이 하면 할수록 목표에서 그만큼 더 이탈되는 딜레마를 가지게 된다. 양보는 두 가지 방법으로, 먼저, 자신이 상대방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을 때 양보는 호의의 표시(a sign of goodwill)로 보여진다. 다른 하나는 자신이 상대방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예측할 수 없을 때 약함의 표시(a sign of weakness)로 보여진다.
- 12) 문화는 국제협상 간 협상가, 협상의 구조, 전략, 과정,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며 협상가가 협상을 보는 시각,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상황을 해석하는 방법, 협상가 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준다. 또한, 문화는 협상 구조나 조직 환경과 같은 협

법¹³⁾은 정전회담에서 유엔군과 공산군 두 진영에서 진행한 국제 협상이란 특징, 서로 간 이념과 문화의 차이, 정전회담의 과정에서 서로 다른 말, 행동으로 서로 이해하지 못한 특징을 나타낸다. 그리고 협상가가 지닌 기타 참조 요인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자신의 행동으로 체면유지, 가치, 전례로 나타낸다. 체면유지는 자신이 상대방에게 능력과 수완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거나 자신이 무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어 양보를 억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가치는 서로 다르거나 양립할 수 없는 문제 또는 부족한 자원 분배의 선호에 따라 생기는 이해충돌을 말한다. 전례는 이전에 있었던 협상의 태도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이 3가지 요소는 정전회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제3 의제 정전회담의 메커니즘과 참모장교 회의의 역할, 나아가 정전회담의 이해도를 높여줄 것이다.

2. 정전감시방법 논의 쟁점사항

가. 정전회담 지도부 의견의 충돌

유엔군과 공산군 지도부¹⁴⁾는 정전회담을 시작하기 전에 정전

상의 구조적 요소에 영향을 주며, 협상가의 전략적 선택에도 영향을 준다. 그리고 문화는 협상 과정 간 정보교환, 양보 등 협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과정에 영향을 준다. Victor A. Kremenyuk et al., *International Negotiation*, pp. 403-409.

- 13) 의사소통의 종류에는 단순히 정보 그대로 해석하는 현안해석(issues interpretation), 감춰진 정보를 발설하는 폭로(disclosure), 제공된 정보를 잘못 해석하는 와전(misrepresentation), 그리고 협상가 의도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협상가 의도에 따른 진술(statement)에 따른 actor's intention)이 있다.
- 14) 유엔군 지휘체계는 미국 대통령-국무부 및 국방부-합동참모본부(JCS, Joint Chiefs of Staff)-유엔군 사령관-문산 합동 전략기획 운용단(JSPOG, Joint Strategic Plans and Operations Group)-개성/판문점 유엔군 대표단으로 되었

에 관한 지침을 결정하였다. 미 합참은 리지웨이에게 정전에 관한 전반적 정책(General Policy)과 최소 조건의 내용을 포함한 지침(The Minimum United States Position)을 하달하였다. 주요 내용은 전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적대행위와 모든 군사작전을 중지하고 비무장지대를 설치하며 유엔군사령관과 공산군사령관에 의해 임명된 동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군사정전위원회가 정전협정 조항의 시행과 준수에 관한 감시를 하는 것이었다. 또한, 군사정전위원회에 의해 임명된 인원들만이 제한 없이 한반도 전 지역을 조사할 수 있고, 전력 증강을 목적으로 한 군사력 도입이 불가하나 부대나 개인의 교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전쟁 물자, 장비를 교체할 때도 같은 수준을 유지하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 협상이 군사적 문제로 엄격히 제한하되 추가적인 다른 협정에 의해 대치될 때까지 기본적인 효력을 계속 발휘한다는 것이었다.¹⁵⁾

반면 공산군의 경우, 마오쩌둥이 기본 원칙을 결정하였고, 이를 스탈린에게 승인받았다. 주요 내용은 쌍방 부대를 38도선으로부터 10마일씩 철수해야 하고, 한반도 외부로부터 무기 및 병력의 반입을 통한 무력증강 행위를 중지하며 중립국 감시위원회를 창설하라는 것이었다. 특히, 전쟁포로 전원 송환, 일정한 기한(3-4개월) 내 모든 외국군 철수, 일정한(2-3개월) 시점까지

다. 유엔군의 경우 미 합참이 미 대통령 혹은 국무부 및 국방부와 회의를 진행하며 정전에 관한 지침을 결정 및 승인받아 리지웨이에게 전달하였다. 공산군 지휘체계는 스탈린-마오쩌둥-저우언라이-리커닝-셰팡으로 구성되었다. 공산군의 경우 스탈린이 정전에 관한 모든 사항을 보고 받았고 주요 사항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마오쩌둥은 스탈린에게 정전회담에 관한 지휘를 위임받으며 측근인 저우언라이와 함께 협상 전략을 결정하여 하달하였다. Charles Turner Joy, *How Communists Negotiate* (New York: The Macmillian Co., 1955), pp. viii-ix.

15) *FRUS 1951, Vol. VII, Part 1*, pp. 598-60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9권, pp. 114-115.

피란민 본 거주지 이송의 내용을 포함하였다.¹⁶⁾

쌍방의 기본 원칙을 살펴보면 쌍방 모두 의견 차이가 있었다. 이는 근본적인 이유였다. 유엔군은 군사적 문제로 제한하여 협상에 대한 기본 원칙을 결정하였으나, 공산군은 군사적 외의 문제도 포함하였다. 정전회담이 시작하기 전에 서로 의견을 주고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로 의견도 주고받지 않았기에 이러한 차이가 있던 것은 당연했지만, 쌍방은 협상을 시작하고 나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서로가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의 문제¹⁷⁾가 있었기 때문이다.

유엔군과 공산군은 논의할 의제를 결정하기 위해 1950년 7월 26일까지 논의하였다. 쌍방은 의제를 결정하기 위해 각자 최초 제안을 제시했지만, 서로가 원하지 않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¹⁸⁾ 대표적으로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외국군의 철수와 군

16) 마오쩌둥은 1951년 7월 5일 먼저 스탈린에게 정전회담의 최초제안 6개 항목의 내용이 담긴 전문을 보냈고, 스탈린은 이에 답변하며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먼저 마오쩌둥이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은 다음을 참고하면 된다. 바르타노프 편, 『해외사료총서11』,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 역(경기: 국사편찬위원회, 2006), pp. 716-717; 다음 스탈린이 마오쩌둥의 전문에 답변한 전문은 다음과 같다. 김명섭, 앞의 책, pp. 188-189.

17) 위에서 언급한 대로 유엔군은 군사적 문제에 한해서 협상을 진행하려 했기에 이에 맞는 기본 원칙을 결정해서 협상에 임하였고, 공산군은 군사적 외의 문제도 포함하여 기본 원칙을 결정해서 협상에 임하였다. 따라서 쌍방의 기본 원칙의 교차점이 없었고, 서로가 정한 기본 원칙이 서로가 어느정도 협상가능한 수치가 아닌 외국군 병력을 철수하냐 안하느냐 등의 문제이기 때문에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쌍방 모두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의 문제였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18) 유엔군의 최초제안은 회의 의제의 채택, 국제적십자 위원회 대표들의 포로수용소 방문을 위한 장소와 권한의 설정, 한반도 문제에 관해 순수히 군사적인 문제만 토의하는 것으로 제한, 한반도에서 적대행위와 군사적 무력행위 금지, 군사 비무장지대 설정, 군사정전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기능, 군사감시단의 권한 설정, 전쟁포로에 관한 사항이었다. 반면에, 공산군의 최초제안은 쌍방의 군사분계선으로 38도선 설치와 비무장지대 설치, 한반도에서 모든 외국군 철수, 정전에 따른 포로에 관한 준비사항이었다. 허미스, 앞의 책, pp. 25-26; 국사편찬위원회, 『남북한관계사료집』 1권, pp. 23-24.

사분계선을 38도선으로 결정하는 것에 관한 항목에 관한 서로의 의견이 반대되었다. 이 문제로 정전협정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산군은 외국군 철수 문제에 관해 정전이 이루어진 후에 정부급 인사에서 토의할 것을 전제로 의제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했고, 군사분계선을 38도선으로 결정하는 문제에 관해 38도선을 언급하지 말고 제2 의제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¹⁹⁾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되었다.

나. 군사분계선 설정 논의

1951년 7월 27일 제2 의제 군사분계선 논의가 시작되었다. 먼저, 어느 선을 군사분계선으로 결정하는지가 쟁점 사항이었다. 공산군은 군사분계선을 전전 상태 회복의 원리에 따라 38도선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유엔군은 접촉선에 따른 분할의 원리에 따라 전투상황에 의거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⁰⁾ 이때 유엔군은 우위에 있던 해·공군력을 군사분계선에 반영²¹⁾하고 싶었으나 공산군이 38도선을 고집하며 반대하였다.

서로가 양보할 수 없는 문제로 충돌하며 쌍방은 협상 전략으로 대립전략을 유지하였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유엔군과 공

19) 이는 마오쩌둥이 7월 15일 38도선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리커닝에게 지시하였다. 그는 38도선 주장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의제에 명시하지 않으며 협상을 진전시키려 하였다. 김보영, 앞의 논문, p. 65; 슈나벨, 왓슨, 앞의 책, p. 33.

20) 김명섭은 역사적으로 전쟁을 끝내고 공간을 재획정 하는데 대표적으로 3가지 방법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첫째로 전전 상태 회복의 원리, 둘째 접촉선에 따른 분할의 원리, 셋째 전쟁책임에 따른 징벌적 혹은 반성적 재조정의 원리이다. 김명섭, 앞의 책, p. 364.

21) 유엔군이 주장한 군사분계선은 다음을 참고하면 된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9권, p. 148.

산군 모두 양보하는 것을 고려했었다. 유엔군은 38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결정하는 것을 검토했고²²⁾, 공산군 내에서는 38도선을 포기하자는 주장이 나왔다.²³⁾

하지만, 본회의에서는 이러한 의견들이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진전이 없자 조이는 1951년 8월 15일 본회의보다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토의 진행이 되길 바라면서 분과위원회 회의 구성을 제안하였고, 공산군도 동의하였다. 분과위원회는 쌍방 협상 대표단의 대표들이 참가하였다.²⁴⁾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유엔군은 해·공군의 우위를 전선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포기하며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공산군은 그 제안이 개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²⁵⁾

기대와 달리 분과위원회 회의에서도 군사분계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하지만, 1951년 11월 6일 미 합참은 미국 여론이 이 문제로 협상이 결렬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에 개성을 양보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²⁶⁾

이제 남은 문제는 과연 어느 시점의 접촉선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었다. 유엔군은 군사분계선을 먼저 정해버리면 공산군이 비협조적인 협상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정전협정이 체결되는 시기에 전선을 결정하길 원하였다. 이와 달리 공산군은 곧바로 현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정하길

22) 미국은 1950년 12월 정전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38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결정하는 것을 검토하였고, 협상 시 38도선을 양보할 수 있는 지점으로 보았다. 김보영, 앞의 논문, p. 75.

23)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권, 한국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pp. 112-113.

24) 분과위원회 회의 대표단은 다음을 참고하면 된다. 군사편찬위원회, 『남북한관계사료집』 1권, p. 432.

25) 군사편찬위원회, 『남북한관계사료집』 3권(서울: 군사편찬위원회, 1994), pp. 45-50; 슈나벨, 왓슨, 앞의 책, p. 129.

26) CINCFE C 56380 to DA for JCS, 1 Nov 1951, DA In 14156.

원하였다.²⁷⁾ 여기서도 결국 세계와 자국 여론을 우려한 미 합참은 1951년 11월 12일 회의를 통해 30일 이내에 타결되지 않는다면 군사분계선이 재협상 돼야 한다는 조건으로 공산군의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리지웨이에게 지시하였다.²⁸⁾ 군사분계선 설정 논의 간에 쌍방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인 해상 영역 분계선에 관련한 내용을 논의하지도 결정하지도 않았다.

결과적으로 유엔군 협상 대표단은 제2 의제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자신들의 의지와 다르게 처음부터 강경하게 유지했던 자신들의 원칙을 공산군에 양보하였다. 유엔군 지도부의 지시로 인해 유엔군 협상 대표단은 의도하지 않았던 개성을 공산군에 양보하였다. 또한, 유엔군은 군사분계선을 결정하는 시점도 공산군의 뜻대로 제2 의제를 합의하는 당일로 양보하였다. 유엔군은 협상 전략에서도 의도하지 않게 대립전략에서 문제해결전략으로 변경하는 형태를 취하는 혼합전략을 취해야 하였다. 한쪽에서만 발생하는 혼합전략, 그중에서도 대립전략에서 문제해결전략으로 바뀌는 혼합전략은 공산군이 유엔군 협상단의 능력을 무시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구사해야 하는 협상 전략이었다. 하지만, 유엔군은 지도부의 결정으로 어쩔 수 없이 혼합전략으로 협상 전략을 전환하였다.²⁹⁾

정전회담의 모색 과정부터 의제 결정 협상, 제2 의제 협상까지 유엔군과 공산군은 시간이 흐를수록 최초제안에서 조금씩 양보하였다. 하지만, 공산군은 유엔군이 받아들일 만한 양보를 제안하지 않았고 협상 과정에서 사실을 왜전시키며 협상의 쟁점을 흐트러뜨리고 협상을 지연시켰다. 유엔군은 상대방의 양보를 얻

27) 국사편찬위원회, 『남북한관계사료집』 3권, pp. 274-292.

28) *FRUS 1951, Vol. VIII, Part 1*, pp. 1122-1124.

29) 유엔군의 협상 전략은 다른 문서에 언급된 것이 아니라 협상 과정을 분석한 저자의 판단으로 결정하여 서술하였다.

지 못하고 협상가 자신의 힘을 약화할 우려가 있는 혼합전략을 사용함으로써, 협상 대표단은 회의장에서 협상력과 자신들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다.

다. 정전감시방법 및 그 기구 설치 관련 논의

1951년 11월 27일 조건부 군사분계선이 설정되며 제2 의제 논의가 끝났다. 조건부 군사분계선 설정 이후 1952년 초까지 유엔군과 공산군은 전 전선에 걸쳐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었으나, 군사분계선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대규모의 전면공세는 실시되지 않았다. 유엔군과 공산군은 교착된 전선에서 대규모 전투보다 진지 강화와 부대정비에 전력하고 있었으며 서로 빈번한 탐색전과 소규모 전초 진지 전투를 통해 상호 접촉을 유지하였다.³⁰⁾ 따라서 쌍방 간 소규모 탐색전이나 포격전만 지속되었다.³¹⁾ 이러한 전환은 이전과 다르게 제3 의제 회의의 경우 군사력 압박이란 수단 없이 순수하게 쌍방의 협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1월 27일부터 제3 의제 본회의가 시작되었다. 군사분계선 설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때와 같이 본회의에서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쌍방은 12월 4일부터 분과위원회 회의를 시작하였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3 의제에서는 논의할 사항이 많았다. 쌍방은 <표 2>와 같이 본회의부터 분과위원회 회의에 이르기까지 최초제안과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합의에 다다르지 못하였다. <표 2>는 정전회담 회의록을 통해 유엔군과 공산군이 본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제시한

30)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7권 (서울: 국방부, 1974), p. 479.

3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 전쟁사』 10권, p. 42.

안을 정리한 것이다. 이것만 본다면 본회의에서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서로가 상대방 의견을 반영하여 자신들의 원칙을 대폭 수정하여 제시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쌍방은 서로 양보했으나 지켜야 할 기본원칙 중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합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논쟁이 계속 되었지만, 군사력 증강 및 감소, 해양 영역, 정전감시 기구 및 방법, 중립국 대상국 선정 논의가 해결되지 않았다. 이 문제들은 참모장교 회의에서 논의되었고, 참모장교 회의는 이전 두 회의에서 해결하지 못하던 문제를 해결하였다.

〈표 2〉 제3 의제 유엔군과 공산군의 제안 현황

구분		유엔군	공산군
본회의	1951. 11. 27	7가지 기본 원칙 제시	5가지 기본 원칙 제시
	1951. 12. 3	-	2가지 기본 원칙 추가 제시
분과 위원회 회의	1951. 12. 6	8가지 기본 원칙 제시	-
	1951. 12. 12	7가지 기본 원칙 제시	-
	1951. 12. 14	-	6가지 기본 원칙 제시
	1951. 12. 23	前안에 대한 수정안 제시	-
	1951. 12. 24	-	前안에 대한 수정안 제시
	1951. 12. 29	前안에 대한 수정안 제시	-
	1952. 1. 9	-	前안에 대한 수정안 제시

* 출처 : 『남북한관계사료집』 2권, 4권, 6권의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

3. 정전감시대상 결정 논의

가. 군사력 증강 및 감소, 교체 논쟁

1) 군사력 증강 및 감소

제3 제의인 정전감시방법 및 그 기구 설치에 관해 논의를 진행하려면 정전감시의 대상을 결정해야 하였다. 앞서 유엔군과 공산군은 각자의 지도부에서 고려한 군사력 증강 및 감소 문제와 제2 의제에서 해결하지 못한 해양 영역 문제를 해결해야 하였다.

본회의에서 쌍방은 각자 지도부 지침을 바탕으로 기본원칙을 작성하였다. 유엔군은 병력, 물자, 장비, 시설의 교체가 가능하지만, 증가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³²⁾ 즉, 유엔군은 한반도에 군사력을 더는 도입하지 않음으로써 확전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유엔군은 각종 시설물 증가를 허용할 수 없으며, 특히 비행장 복구 및 증설을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반면에 공산군은 정전의 안정성을 위해 어떠한 구실로도 병력이나 무기, 탄약을 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주장하였다.³³⁾ 즉, 공산군은 한반도에서 병력이나 물자 및 장비 등을 내보내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 자체를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공산군은 비행장 복구 및 증설이 안 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32) 1951년 11월 27일 유엔군이 제시한 7개의 기본 원칙 중 3번 항목이다. 국사편찬위원회, 『남북한관계사료집』 2권(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94), pp. 19-20.

33) 1951년 12월 3일 북한군이 이전에 제시했던 5개 기본원칙에 더하여 추가한 2가지 원칙, 총 7개 원칙 중 6번 항목이다. *Ibid.*, p. 132.

1951년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된 본회의에서 쌍방은 처음 했던 주장만을 반복하였다. 여전히 제2 의제 논의에 이어 쌍방은 대립전략으로 임하였고 협상에 진전은 없었다. 회의 진행을 위해 12월 4일부터 분과위원회 회의가 열렸지만, 협상에 진전은 없었다. 쌍방 모두 양보할 수 없는 문제로 판단했고 대립전략을 유지하였다.

이 시점에서 공산군 지도부는 자신들이 군사력 증강 및 감소 문제, 특히 병력 교체를 어느 정도 허용하면 다른 문제에서 유엔군이 양보하리라 판단하였다.³⁴⁾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공산군은 한 달에 5,000명의 병력 교체를 제안하였다.³⁵⁾ 하지만, 이는 도저히 유엔군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었다. 당시 유엔군 중 미군만 약 26만여 명이 주둔한 상태였고, 매달 5,000명씩 교체한다면 전부 교체하는데 최소 4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예상하였다.³⁶⁾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양보는 협상에 도움되지 않았다. 협상이 진행되지 않자 쌍방은 지금까지 언급한 논의를 정리하고 합의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 빠르게 합의하기 위해 참모장교 회의를 구성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따라서 참모장교 회의는 1951년 12월 20일 처음 개최되어 12월 22일까지 3일간 진행되었다.

참모장교 회의에서 쌍방은 그 이전에 하지 않았던 양보를 하기 시작하였다. 유엔군은 1951년 12월 22일 비행장 복구 및 증설에 관한 사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시민들의 편리함과 북한의 경제를 위해 비행장 재건을 허락한다는 조건부 제안을 제시하였다. 단, 전투기를 운용할 수 없도록 활주로 연장을 포함

34)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앞의 책, p. 334.

35) 1951년 12월 14일 공산군의 기본원칙 중 4번 항목의 제안이다. 국사편찬위원회, 『남북한관계사료집』 4권(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94), pp. 210-230.

36) 슈나벨, 왓슨, 앞의 책, p. 161.

하지 않는 선에서 비행장 재건 및 복구가 가능하다는 제한을 두었다.³⁷⁾ 유엔군은 자신들이 양보할 수 있는 카드를 제시하였다. 이는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그러나 공산군은 이 제안이 내정간섭이라 주장하며 반대하였다.

공산군의 반대는 이전에 했던 주장과 논리적으로 맞지 않았다. 군사력 증강 및 감소 논쟁에서 공산군은 군사력의 감소만이 이루어져야 하고 교체를 허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공산군은 공군력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비행장의 복구 및 증설을 주장하였다. 만약, 공산군이 자신들의 공군력을 증가시킬 의도가 없었다면, 공산군은 유엔군의 제안을 충분히 매력적으로 느껴 받아들였을 것이다. 하지만, 공산군은 조건부 비행장 복구 및 증설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고 결국, 참모장교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다시 분과위원회 회의가 열렸고, 분과위원회 회의는 1951년 12월 22일부터 1952년 1월 25일까지 열렸다. 쌍방은 양보하지 않았고 이전보다 나아진 제안을 하지 않았다. 분과위원회 회의에서도 쌍방의 협상 전략은 대립전략을 유지하였다. 이때 쌍방은 군사력 교체와 비행장 복구 및 증설 문제에서 조금씩 양보했지만, 서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었다. 협상을 체결하려면 상대방이 생각한 양보 지점이 내가 생각한 협상 가능한 영역 내로 들어와야 하고 내가 생각한 양보 지점이 상대방이 생각한 협상 가능한 영역 내로 들어와야 하였다. 하지만,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그러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정체된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쌍방은 다시 참모장교 회의를

37) Staff Officers 국사편찬위원회, 『남북한관계사료집』 6권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94), pp. 75-83.

열기로 하였다.³⁸⁾ 여기서 그들은 제3 의제에서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정전회담을 체결하기 전 작성해야 할 협정문서를 작성하고, 협정문에 들어갈 단어와 문장에 대한 오해, 오역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이에 더해 참모장교 회의는 위 사항뿐만 아니라 앞서 해결되지 않던 병력 교체 문제를 해결하였다.

2) 병력 교체

참모장교 회의가 열리며 회의 분위기가 뒤흔어졌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던 문제에 대한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유엔군은 지금까지 논의하여 결정된 기본원칙과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던 항목을 정리하여 협정문에 들어갈 내용을 작성하였다.³⁹⁾ 공산군은 유엔군이 제시한 협정문의 틀과 유엔군이 사용한 단어와 구절을 바탕으로 협정문을 분석하고 회의에 참석하였다. 먼저, 병력 교체에 관한 사항으로 유엔군은 한 달에 7만 5,000명의 병력을 교체할 수 있고, 그중 수송 및 지원 근무자⁴⁰⁾를 제외한다고 주장하였다. 유엔군은 약 60만 명의 병력을 한 달에 5만 명씩 교체한다면 1년이 걸린다는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⁴¹⁾ 하지만 문제는 공산군과 유엔군이 제시한 병력 교체 인원수 차이가 7만 명이라는 것이었다. 쌍방 모두 병력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과 무제한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에서 양보한 제안이었지만,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38) 국사편찬위원회, 『남북한관계사료집』 4권, pp. 697-699.

39) 1952년 1월 27일 유엔군이 제시한 정전협정문은 아직 논의하지 않은 제5 의제와 치열하게 논의중인 제4 의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작성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 『남북한관계사료집』 6권, pp. 88-104.

40) 수송 및 지원 근무자는 교체 인원이 포함되지 않는 물류 활동에 종사하는 항공, 해상 또는 지상 운송의 운영 승무원을 말한다.

41) Second Meeting of Staff Officers on Details of Agreement of Agenda Item 3, Held at Pan Mun Jom, 29 January 1952. *Ibid.*, pp. 105-122.

계속된 논쟁 속에서 유엔군은 공산군이 오해할만한 발언이자 차후에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발언을 하였다. 유엔군은 만약 병력 교체 간 수송 및 지원 근무자를 제외한다면 4만 명까지 양보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 발언은 공식적인 제안이 아니었지만, 공산군은 조건은 생각하지 않고 유엔군이 제시한 4만 명이라는 교체 인원수를 기준으로 생각하였다. 유엔군의 발언으로 공산군은 다음날 기존 주장에서 수송 및 지원 근무자를 포함한 2만 5,000명까지 양보하겠다고 제안하였다.⁴²⁾ 이 제안은 수송 및 지원 근무자를 포함할 뿐 아니라 유엔군이 생각한 교체 인원수보다 터무니없는 제안이었기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산군은 수송 및 지원 근무자를 포함해야 하는 이유로 중립국 감시기구가 조사를 수행할 때 그 인원들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였다.⁴³⁾ 그리고 공산군은 계속해서 앞서 유엔군이 언급했던 4만 명이라는 수치를 걸고넘어졌다. 공산군은 논쟁전술을 통해 논점을 흐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어가려 하였다. 하지만, 유엔군은 이 회의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를 설정했기에 공산군의 논쟁전술에 휘둘리지 않았다.

이러한 논쟁전술은 1952년 2월 4일에 시작하여 2월 12일까지 계속되었다. 구체적인 교체 인원수를 논의할 때 공산군은 유엔군의 제시안에 대해 왜 이전에 제안한 4만 명보다 많은 수를 제안하냐고 비판하였다. 공산군이 생각한 최대양보선⁴⁴⁾을 정확히

42) Third Meeting of Staff Officers on Details of Agreement of Agenda Item 3, Held at Pan Mun Jom, 30 January 1952. *Ibid.*, pp. 123-139.

43) Sixth Meeting of Staff Officers on Details of Agreement of Agenda Item 3, Held at Pan Mun Jom, 2 February 1952. *Ibid.*, pp. 176-198.

44) 최대양보선은 협상을 진행하기 이전의 준비단계에서 보통 상대방이 대단히 완강하게 나오는 경우, 협상을 파기하기 직전에 최대로 양보할 수 있는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수준을 말한다. 이달곤, 『협상론: 협상의 과정, 구조, 그리고 전략』 (경기: 법문사, 2007), pp. 248-249.

어디인지 언급되어있지 않지만, 4만 명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들의 교체 수에서 최대양보선은 4만 명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공산군은 이를 밝히지 않았다.

2월 9일 드디어 공산군이 수송 및 지원 근무자를 제외한 교체 인원수로 2만 5,000명을 제안하였다.⁴⁵⁾ 이제 쌍방이 인원 교체 수를 언급할 때 수송 및 지원 근무자는 제외되었다. 공산군의 양보에 유엔군도 병력 교체 수를 4만 명으로 양보하였다. 다시 공산군은 2월 12일 교체 인원수를 3만 명으로 제안하였다.⁴⁶⁾ 유엔군의 최대양보선 역시 판단하기 어렵지만, 공산군이 수송 및 지원 근무자를 제외한 2만 5,000명이란 수를 제시했을 때 유엔군도 양보하며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한 것을 보아 2만 5,000명으로 예상되었다. 유엔군 역시 최대양보선을 밝히지 않았다

참모장교 회의에서 쌍방은 병력 교체 수를 양보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1>과 같이 병력 교체에 관한 제안의 변화를 비교하자면, 공산군은 교체 불가능 지점(C1)에서 5,000명(C2), 2만 5,000명(수송 및 지원 근무자 포함, C3), 2만 5,000명(수송 및 지원 근무자 제외, C4), 3만 명(C5)으로 증가했고, 유엔군은 교체 무제한(U1)에서 7만 5,000명(수송 및 지원 근무자 제외, U2), 6만 명(수송 및 지원 근무자 포함, U3), 4만 명(수송 및 지원 근무자 제외, U4)으로 감소하였다. 공산군의 최대양보선은 C(=U3)지점이었고, 유엔군의 최대양보선은 U(=C3)지점이 최대양보지점이었다. 따라서 합의가능영역⁴⁷⁾은 2만 5천 명(수송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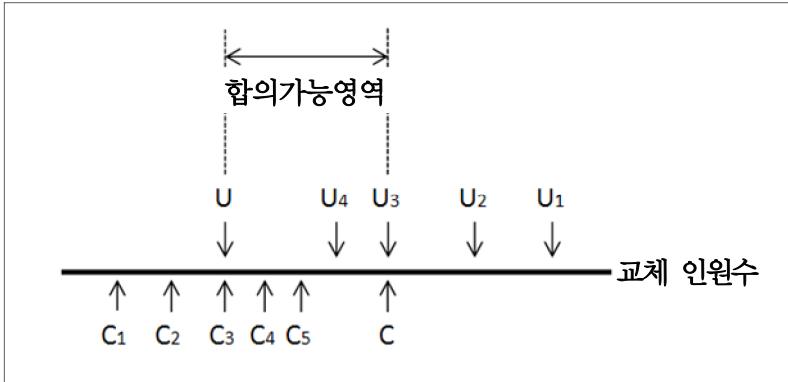
45) Thirteenth Meeting of Staff Officers on Details of Agreement of Agenda Item 3, Held at Pan Mun Jom, 9 February 1952. 국사편찬위원회, 『남북한관계사료집』 6권, pp. 287-290.

46) Sixteenth Meeting of Staff Officers on Details of Agreement of Agenda Item 3, Held at Pan Mun Jom, 12 February 1952. *Ibid.*, pp. 309-315.

47) 합의가능영역은 양자 협상이 진행되는 경우 이론상 서로 간 마음속에 감춘 최대양보선 사이의 영역을 의미하고, 그 영역 내에서는 어느 점에서든 합의가 이루어질

지원 근무자 포함)부터 6만 명으로 아래 표시된 영역과 같다.

〈그림 1〉 병력 교체 관련 유엔군과 공산군의 합의가능영역



* 출처 : 『남북한관계사료집』 6권의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 (U: 유엔군, C: 공산군)

이처럼 쌍방은 참모장교 회의를 통해 최초제안에서 상대방이 양보할만한 제안을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이내 협상에서 유엔군과 공산군은 협상 전략이 문제해결전략으로 바뀌었고,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준의 양보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전까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되던 가치의 갈등이 해결되었다.

기나긴 논쟁 끝에 마침내 1952년 2월 23일 쌍방은 유엔군의 제안대로 병력 교체 수를 3만 5,000명으로 합의하였다.⁴⁸⁾ 이때 공산군은 처음에 유엔군의 제안을 받아들이진 않지만, 이와 함께 논의된 사항 중 출입항 개수 문제를 양보한다는 조건으로 받아들였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합의가능영역은 상당한 폭을 가질 수도 있고 매우 좁을 수도 있다. 또한, 합의가능영역이 없다면 아무리 노력하여도 타결점을 찾을 수 없게 된다. 이달곤, 앞의 책, pp. 249-250.

48) 국사편찬위원회, 『남북한관계사료집』 6권, pp. 381-389.

나. 해양 영역 관련 논쟁

1) 해석의 차이

군사력 증강 및 감소 논의에 이어 해양 영역 논의 역시 제3의제 이전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 중 하나였다. 물론, 이 두 가지 논의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1951년 11월 27일 시작된 본회의에서 공산군은 서로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기 위해 쌍방의 모든 무장 부대가 상대방의 후방과 연안⁴⁹⁾ 도서(coastal island), 그리고 상대방의 영해⁵⁰⁾(water)에서 일정 기간 내에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⁵¹⁾ 공산군은 이미 제2 의제인 군사분계선 설정 논의에서 유엔군의 해·공군력의 우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를 지상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마오쩌둥이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여러 차례 리커농에게 연락하여 반드시 상대방 군사력을 자신들의 연안 도서와 영해로부터 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이었다.⁵²⁾ 이와 반면, 유엔군은 제2 의제에서 해·공군력을 포기하면서 군사분계선을 설정했기에 해양 영역에 대해서까지 양보하려 하지 않았다. 결국, 본회의에서 해결되지 않아 1951년

49) 「연안관리법」 제2조에 의하면 연안이란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을 말하며, 연안해역은 바닷가(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 사이)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영해의 외측한계까지의 바다를, 연안육역은 무인도서와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m 범위안의 육지지역으로서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해양수산 용어사전, 2022년 11월 22일 검색,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949417&cid=67003&categoryId=67003>.

50) 영해란 영토에 인접한 해역으로서, 그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한다. 또한 영해는 내해, 만, 해협 등으로 이루어지며, 해수면이 가장 낮은 썰물 대의 해안선을 기준으로 나라에 따라 3해리, 6해리, 12해리를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7년 영해법의 시행에 따라 12해리(22km)를 영해로 선포하였다. 합동군사대학교, 『합동작전 용어해설집』 (서울: 합동군사대학교, 2014), pp. 306-307.

51) 1951년 11월 27일 공산군이 제시한 5개의 기본 원칙이다. 국사편찬위원회, 『남북한관계사료집』 2권, pp. 13-14.

52)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앞의 책, p. 334.

12월 4일 분과위원회 회의가 시작되었다.

먼저, 유엔군은 공산군이 사용하는 연안 도서와 영해의 뜻과 그 기준을 확인하려 하였다.⁵³⁾ 하지만, 공산군은 자신들이 사용한 연안 도서의 기준을 명확히 알려주지 않았다.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공산군의 주장을 바탕으로 추정해 볼 때 연안 도서의 뜻은 특정 기준에 상관없이 연안에 포함된 도서 전부와 영해를 모두 포함한 것이었다. 공산군은 구체적인 수치 없이 자신들 영토 주변의 도서를 모두 포함하려 하였다. 따라서 유엔군은 이 해석을 확실히 하지 않는다면 도서의 통제와 제해권을 모두 내어줄 수 있기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려 하였다.

분과위원회 회의에서도 협상 진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문제는 미 합참이 양보하면서 해결되기 시작하였다. 미 합참은 정전협정의 타결에만 다다른다면 제해권을 포기해도 상관없다고 판단하여 1951년 12월 11일 협상 대표단에게 군사분계선 북방에 있는 도서에서 철수하라는 지침을 내렸다.⁵⁴⁾ 이때 유엔군 협상 대표단은 군사분계선 북방에 있는 도서라고 언급하지 않고 12월 12일 상대방의 영토와 영해로부터 병력을 철수한다고 주장하였다. 유엔군은 도서를 넘겨주지만, 조금이라도 우위에 있는 해양 영역에서 이득을 얻기 위해 영해의 뜻을 확실히 결정하고 싶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유엔군은 1951년 12월 20일부터 3일간 개최된 참모장교 회의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서로가 통제했던 지역을 통제하는 것으로 양보하였다. 이때에도 유엔군은 영해의 기준을 결정하고 싶었지만, 공산군이 이에 대한 언급을 피

53) Transcript of Proceedings, Second Session, Meeting at Pan Mun Jom, Sub-Delegations on Agenda Item 3, Military Armistice Conference. 국사편찬위원회, 『남북한관계사료집』 4권, pp. 20-42.

54) 슈나벨, 왓슨, 앞의 책, p. 159.

하였다.⁵⁵⁾ 해양 영역 논의에서 유엔군은 제해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양보했지만, 공산군은 해양 영역 관련 명확한 기준을 논의하지 않았고 양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 논의를 마지막으로 참모장교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952년 1월 27일까지 해양 영역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이후에 유엔군이 서해 5도와 영해의 기준을 언급하면서 다시 논의가 시작되었다.

2) 해양 영역의 범위

1952년 1월 27일 시작된 참모장교 회의에서 유엔군은 협정문을 제시하며 해양 영역에 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하였다. 유엔군은 협정문에 정전협정이 발효되고 5일 이내에 후방과 상대방 영해와 연안 도서에서 군사력, 물자, 군수품, 전쟁 장비를 모두 철수시킨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또한, 유엔군은 논의된 단어의 정의도 함께 기술하였다. 그들은 연안 도서를 1950년 6월 24일 전쟁 이전에 통제하고 있던 섬이라 정의하였고, 영해를 썰물 때 해안에서 3마일 이내에 있는 해역으로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논란이 될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는 유엔군 사령관이 통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유엔군은 하나의 항목을 통해 논의했던 사항에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하였다. 영해의 범위는 공산군이 원했던 12마일이 아닌 유엔군이 원했던 3마일이었다. 또한 위의 서해 5도를 유엔군이 통제한다고 명시하였다.

55) 1951년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참모장교 회의에서 유엔군은 공산군에 끊임없이 영해의 범위, 기준을 물었다. 공산군은 영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에 대답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피했지만, 계속된 질문에 만약 영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그 범위를 12마일 떨어진 지역이라고 언급하였다. 1951년 12월 21일 참모장교 회의의 내용이다. 국사편찬위원회, 『남북한관계사료집』 6권, pp. 38-47.

유엔군이 언급한 서해 5도는 모두 38도선 이남에 위치하였다. 당연히 유엔군이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38도선 이남에 위치한 웅진반도를 공산군이 차지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바로 웅진반도 인근에 위치한 서해 5도의 섬들이 웅진반도를 기준으로 연안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공산군이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 공산군의 주장대로 결정된다면, 유엔군은 장악했던 제해권을 포기하면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 그렇기에 유엔군은 공산군이 반대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협정안에 이 내용을 포함하였다.

유엔군의 제안에 공산군은 황해도와 경기도 사이 경계선의 북서쪽 도서 지역으로부터 철수해야 한다고 반대하였다.⁵⁶⁾ 즉, 서해 5도의 통제를 넘겨주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유엔군은 전장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제해권을 포기하였고, 대신 서해 5도를 가져가야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더는 양보하지 않았다. 서해 5도 문제 외에 여전히 영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의 문제와 해상분계선 개념을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었다.

다음 논의는 영해의 범위에 관한 문제였다. 범위의 기준이 명확해야 서로가 자신들의 연안 도서에 침범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즉, 육지로부터 어디까지를 영해로 인정하느냐였다. 공산군은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발효된 후에 쌍방 모두 해상을 봉쇄하고 순찰, 정박 등의 모든 활동을 중단하기 때문에 영해의 거리를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유엔군은 공산군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었다. 유엔군은 상대방 영해에서 활동을 중지할 때 상대방 영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

56) Third Meeting of Staff Officers on Details of Agreement of Agenda Item 3, Held at Pan Mun Jom, 30 January 1952. *Ibid.*, pp. 123-139.

확히 알아야 군사적 활동을 중지하기 때문에 정확히 거리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⁵⁷⁾

논의 끝에 공산군은 도서 문제 관련하여 자신들의 본토와 가까운 섬들이 그들의 지휘하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신들이 참모장교 회의를 원활하게 이끌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해 5도를 유엔군에 양보한 것을 강조하였다.⁵⁸⁾ 남은 문제는 영해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었으나, 공산군이 완강한 태도로 반대하며, 이번에는 유엔군이 양보하여 범위를 명시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마침내 1952년 2월 14일 쌍방은 서해 5도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자 지도를 통해 비교하였고 위도와 경도를 표시하고 달랐던 섬의 명칭도 통일하며 해양 영역 문제를 해결하였다.⁵⁹⁾

해양 영역 논의는 정확한 수치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앞의 논의보다 쌍방의 최대양보선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공산군은 유엔군이 제해권을 포기하고 38도선 이남으로 군사력을 철수한다고 했을 때 협상에서 일정 부분 양보했고, 유엔군은 앞서 의도된 진술처럼 서해 5도의 통제권을 얻는 지점이 최대양보선이였다. 〈그림 2〉와 같이 공산군은 38도선 이남으로 철수 지점(C1)에서 연안 도서라는 단어의 포기(C2), 서해 5도의 통제권 포기(C3)로 양보하였다. 유엔군은 영해의 범위 외 모든 도서 통제 및 해군력 우위 유지(U1)에서 제해권 포기(U2), 영해의 범위 포기(U3)로 양보하였다. 공산군의 최대양보선은 C(=U2)지점이었고, 유엔군의 최대양보선은 U(=C3)지점이 최대양보선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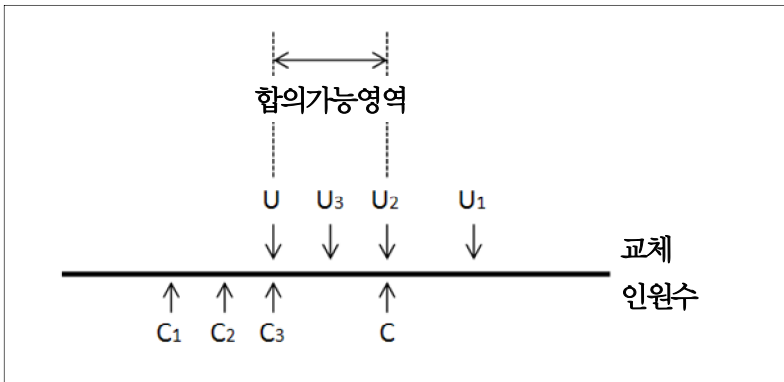
57) Sixth Meeting of Staff Officers on Details of Agreement of Agenda Item 3, Held at Pan Mun Jom, 2 February 1952. *Ibid.*, pp. 176-198.

58) Seventh Meeting of Staff Officers on Details of Agreement of Agenda Item 3, Held at Pan Mun Jom, 3 February 1952. *Ibid.*, pp. 199-217.

59) Eighteenth Meeting of Staff Officers on Details of Agreement of Agenda Item 3, Held at Pan Mun Jom, 14 February 1952. *Ibid.*, pp. 326-338.

따라서 합의가능영역은 공산군이 서해 5도의 통제 포기한 순간부터 유엔군이 제해권을 포기한 순간까지로 아래 표시된 영역과 같다.

〈그림 2〉 해양 영역 관련 유엔군과 공산군의 합의가능영역



* 출처 : 『남북한관계사료집』 6권의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 (U: 유엔군, C: 공산군)

미 합참은 제3 의제 논의에서 해양 영역 문제를 양보할 수 있는 협상 카드로 고려하였다.⁶⁰⁾ 유엔군은 미 합참의 지시에 따라 제해권을 포기했지만, 참모장교 회의에서 논란이 될 서해 5도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오며 나름대로 유엔군에 이익을 가져왔다. 결과적으로 각 회의 별 군사력 증강 및 감소 논의와 해양 영역 논의에서 해결한 사항은 〈표 3〉과 같다. 비행장 복구 및 증설 문제를 제외하고 쟁점이 된 사항을 해결하였다. 참모장교 회의로 갈수록 상대를 움직일만한 제안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합의에 이르기 시작하였다.

6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 159.

〈표 3〉 제3 의제 회의별 군사력 증강 및 감소, 해양 영역 논의 해결 사항

구분	군사력 증강 및 감소	해양 영역
본회의	· 해결된 사항 없음	· 해결된 사항 없음
분과위원회 회의	· 해결된 사항 없음 · 공산군의 양보: 군사력 감소→ 매달 5,000명 병력 교체	· 해결된 사항 없음 · 유엔군의 양보: 상대방의 영토와 영해로부터 병력 철수, 영해의 영역 벗어난 도서는 유엔군이 통제
참모장교 회의 (51.12.20 -22)	· 유엔군의 양보: 비행장 복구 및 증설 불가→ 조건부 비행장 복구 및 증설 허용	· 합의: ‘영해’ 삭제, 서로가 이전에 통제했던 영역으로 명시(유엔군의 양보)
참모장교 회의 (52.1.27 -4.2)	· 합의: 병력 교체 매달 3만 5,000명, 장비 및 탄약 조건부 교체 가능	· 합의: 상대방 연안 도서 및 영해에서 병력 철수(단 서해 5도는 유엔군이 통제, 공산군의 양보), 영해의 범위 삭제(유엔군의 양보)
해결하지 못한 사항	· 비행장 복구 및 증설	· 없음

* 출처 : 『남북한관계사료집』 4권, 6권의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

4. 정전감시방법 결정 논의

가. 정전감시 기구 및 감시방법 논쟁

1) 군사정전위원회와 감시기구의 관계 및 감시기구의 구성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전 회담 초기와 제2 의제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에 관한 논의가 제3 의제 기본 주제와 함께 다루어졌다. 유엔군과 공산군은 이전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와 정전감시 기구 및 감시 방법을 논의하여야 하였다.

정전감시 기구 및 감시 방법에 관한 지도부의 지침으로 공산군 지도부는 누가 감시를 수행할지와 감시 지점의 수에 대해 명

확한 지침을 정해두었다. 마오쩌둥은 중립국 대상국을 선정하여 그들로 감시가 이루어져야 하고, 후방지역에 한 개 또는 두 개의 출입항에서 감시가 수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협상단에 전달하였다.⁶¹⁾ 유엔군 지도부는 누가 감시를 수행할지와 어떻게 감시를 수행할지에 대해 지침을 정해두었다. 미 합참은 지상과 공중에서 군사정전위원회 예하의 공동감시팀에 의한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⁶²⁾ 쌍방 지도부의 지침에는 차이가 있었다. 유엔군과 공산군 지도부의 지침에 따르면 쌍방은 상대방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1951년 11월 27일 시작된 본회의에서 쌍방의 주장은 지도부의 지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먼저, 감시기구의 권한과 한반도 내 감시를 수행할 감시기구에 관한 주요 논쟁이 시작되었다. 유엔군은 감시기구에 한반도 전역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⁶³⁾ 반면, 공산군은 그 권한에 반대하며 중립국 대표로 구성된 감시기구가 정전감시를 수행해야 하고, 중립국 감시기구가 독립적인 기구로 존재하여 단순히 감시 및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데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⁶⁴⁾ 또한, 공산군은 감시기구가 공중에서 감시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당시 전황으로 공산군은 제2 의제가 체결되고 나서 제3 의제가 시작되자 진지 강화와 부대정비를 진행하며 병력을 보강하고 있었다.⁶⁵⁾ 또한, 공산군은 철도와 도로를 복구하고 비행장

61) 1951년 11월 19일 마오쩌둥은 리커닝에게 5가지 원칙을 하달하였다.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앞의 책, pp. 328-330.

62) 슈나벨, 왓슨, 앞의 책, pp. 89-91.

63) 1951년 11월 27일 유엔군이 제시한 7가지 기본 원칙 중 4번에 해당한다. 『남북한 관계사료집』 2권, pp. 19-20.

64) 1951년 12월 3일 공산군이 자신들의 5가지 원칙에서 추가한 2가지 원칙을 추가한 6, 7번 항목을 제시하였다. 원문은 <부록 2>을 참고하면 되고, 이 중 7번이 내용에 해당하는 항목이다. *Ibid.*, pp. 132.

6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 전쟁사』 9권, p. 585.

을 건설하고 있었다.⁶⁶⁾

만약 공산군의 주장대로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시기구의 관계가 구성된다면, 군사정전위원회는 한정된 구역 내에서만 중립국 감시기구의 보고를 받기 때문에 감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또한, 감시기구의 권한이 공산군의 주장대로 한정된다면, 중립국 감시기구는 수송선, 차량, 기차가 한반도에 들어올 예정일 때만 그 위치에서 입국과 출국 사실만을 간단히 확인했을 것이다. 따라서 본회의에서 유엔군과 공산군은 각자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서로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어떠한 양보도 할 수 없었다. 본회의에서 유엔군과 공산군은 대립전략으로 협상에 임하였고 협상에 진전이 있을 수 없었다.

1951년 12월 4일 분과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분과위원회 회의에서는 본회의에서 논의한 감시기구의 구성, 감시기구의 지휘 관계 및 권한, 감시 방법에 더해 감시 지역을 추가로 논의하였다. 쌍방은 이전에 논의되었던 사항에 관하여 본회의에서 했던 주장을 반복하였다. 감시 지역에 관한 논의에서 유엔군은 출입항(ports of the entry)을 감시 지역으로 선정하고 출입항에 항구와 주요 철도, 특히 비행장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공산군은 답변을 회피하며 출입항에 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다.

분과위원회 회의에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던 도중에, 미 합참은 이전에 논의한 사항인 감시기구의 구성, 감시기구의 지휘 관계 및 권한, 감시 방법에 관한 항목을 양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즉, 독립된 중립국 감시기구로 정전감시를 수행⁶⁷⁾하며 감시 방법으로 공중정찰을 포기⁶⁸⁾하라는 것이었다. 지침을 받은

66)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서울: 세경사, 1991), pp. 172-173.

67) *FRUS 1951, Vol. VII, Part 1*, pp. 1278-1279.

68) *Ibid.*, pp. 1377-1382.

유엔군은 다음날 공산군의 뜻대로 중립국 감시기구를 구성하고 독립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다만, 이것은 비무장지대 외 지역에만 해당하는 것이었다. 유엔군은 비무장지대 내에서 군사정전위원회 및 군사정전위원회가 선정한 중립국 감시팀이 감시 및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⁶⁹⁾ 그리고 유엔군은 지도부 지침대로 12월 29일 유엔군은 공중정찰 방법을 포기하였다.⁷⁰⁾

결과적으로 유엔군은 공산군의 주장대로 중립국 감시기구가 감시 및 조사를 수행하고 공중정찰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양보하였다. 하지만 유엔군은 비무장지대 내의 지역에서 일어나는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 및 조사만이라도 자신들의 주장대로 진행하길 원하였다. 따라서 유엔군은 비무장지대 내에서 군사정전위원회 예하 합동감시팀에 의해 감시가 진행되는 것을 결정하였다. 유엔군 협상 대표단은 지도부의 지침과 공산군의 주장에 이끌리지 않고 그 와중에 나름대로 실리를 챙겼다.

2) 정전감시방법

앞서 감시기구의 구성,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시기구의 관계 및 역할, 공중정찰 감시에 관한 논의가 끝났다. 하지만 어느 지역을 감시할지에 관한 문제, 즉 출입항 위치를 선정하지 않았다. 또한 출입항 지점에서 주변을 감시하는 범위도 결정되지 않았다. 이 문제는 중요한 사항이었다. 앞서 정전협정의 원칙, 정전감시대상, 정전감시기구, 권한 등을 잘 만들었어도 제대

69) 1951년 12월 12일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유엔군은 7가지 항목의 수정안을 제시하였고, 이것이 마지막 제안이고 이를 수정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강조하였다. 원문은 <부록 7>의 제4-a항과 제4-b항을 참고하면 된다. 국사편찬위원회, 『남북한관계사료집』 4권, pp. 169-191.

70) 1951년 12월 29일 분과위원회 회의의 내용이다. *Ibid.*, pp. 423-437.

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 확인이 제대로 안 된다면 쓸모없는 일이었다.

1952년 1월 27일 참모장교 회의가 시작하면서 유엔군과 공산군은 정전감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쌍방이 결정해야 할 사항은 비무장지대 내 군사정전위원회 예하 합동감시팀의 수, 비무장지대 외 중립국 감시기구가 운영할 중립국 감시팀의 수,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대로 중립국 감시팀을 운영할 지역인 출입항의 위치, 중립국 감시팀이 감시 활동할 범위였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출입항의 위치와 중립국 감시기구의 활동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유엔군은 협정문 제44항에 감시를 진행할 장소로 한국에 10개소, 북한에 12개소를 선정했고 그 지역의 직경 30마일 내에서 감시 및 조사를 진행한다고 주장하였다.⁷¹⁾ 하지만, 공산군은 유엔군의 주장과 달리 출입항의 경우 쌍방 모두 3개소만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출입항 위치로 한국에는 부산, 인천, 수원, 북한에는 신의주, 함흥, 청진을 주장하였다.⁷²⁾ 출입항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지만, 참모장교 회의에서 쌍방은 의견을 주고받으며 서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의 차이를 좁혀나갔고 상대가 받아들일 만한 제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쌍방은 서로를 이해시키기 위해 논리적인 주장을 펼쳤다. 공산군은 병력 교체 수가 너무 많으면 중립국 감시팀에 임무가 너무 가중되고, 그렇게 되면 중립국 감시팀의 수도 늘려야 하는데 거기에 출입항의 개수까지 늘린다면 이를 통제하기란 사

71) 유엔군이 제시한 한국 10개 장소는 서울(인천 포함), 양양, 충주, 대전, 안동, 전주(군산 포함), 대구, 원주, 순천, 부산이고, 북한 12개 장소는 신의주, 만포진(강계 포함), 혜산진, 회령, 청진, 신안주, 함흥(홍남 포함), 평양(진남포 포함), 원산, 벽동, 선진, 해주이다. 원문은 <부록 4>의 제23-a항, 제44항을 참고하면 된다. 국사편찬위원회, 『남북한관계사료집』 6권, pp. 95-101.

72) Fifth Meeting of Staff Officers on Details of Agreement of Agenda Item 3, Held at Pan Mun Jom, 1 February 1952. *Ibid.*, pp. 158-175.

실상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펼쳤다.⁷³⁾ 하지만, 유엔군은 이 논리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지정된 출입항의 범위를 넓히고자 하였다. 유엔군은 중립국 감시팀이 조사가 가능한 범위에 관해서도 범위를 넓혀서 최대한 많은 지역을 감시하고자 하였다. 즉 유엔군은 공산군이 출입항 개소를 줄여나가려 하니 대안으로 출입항 위치에서 감시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서 주변에 비행장과 항구를 모두 포함하려 하였다. 그리고 그 범위로 30마일로 설정하였다.⁷⁴⁾ 반면 공산군은 그 권한을 제한하려 하였다. 공산군은 감시 가능한 범위를 최소화하려 했기 때문에, 유엔군의 제안을 반대하였다. 1952년 2월 4일 유엔군이 한발 물러서며 10개소의 출입항 개수를 제안했으나 공산군은 계속해서 출입항 개수로 3개소를 주장하였다. 이에 유엔군은 10일에 8개소, 11일에 7개소까지 양보하였다.⁷⁵⁾ 그제야 공산군은 움직이기 시작했고, 출입항 개수로 4개소를 제안하였다.⁷⁶⁾

서로가 조금씩 양보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었다. 공산군은 유엔군에게 출입항 개수에서 양보하지 않는 이유로 그렇게 많은 양의 무기와 탄약을 들여올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감시팀의 임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며 설득하였다. 하지만, 유엔군은 출입항의 개수가 적다면 교체가 이루어

73) Seventh Meeting of Staff Officers on Details of Agreement of Agenda Item 3, Held at Pan Mun Jom, 3 February 1952. *Ibid.*, pp. 199-217.

74) 유엔군은 한국의 경우 서울에 인천을 포함했고 북한의 경우 평양에 진남포를 포함하였다. 유엔군이 30마일로 설정한 이유는 서울의 경우 인천, 김포, 수원 공항을 비롯한 주요 철도 등 출입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75) Fourteenth Meeting of Staff Officers on Details of Agreement of Agenda Item 3, Held at Pan Mun Jom, 10 February 1952; Fifteenth Meeting of Staff Officers on Details of Agreement of Agenda Item 3, Held at Pan Mun Jom, 11 February 1952. *Ibid.*, pp. 291-308.

76) Sixteenth Meeting of Staff Officers on Details of Agreement of Agenda Item 3, Held at Pan Mun Jom, 12 February 1952. *Ibid.*, pp. 309-315.

질 때 필요한 지역과 먼 지역에서 병력 혹은 장비를 교체하기에 이동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고 지적하였다.⁷⁷⁾

앞서 병력 교체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출입항 개수 문제도 해결되지 않자 참모장교 회의에서 이 두 가지 문제가 함께 엮여서 논의되었다. 이전까지 유엔군은 병력 교체 수와 출입항 개수를 따로 논의했고 각각 4만 명, 7개소를 제안하였다. 하지만 1952년 2월 20일부터 유엔군은 병력 교체 인원수 3만 5,000명과 출입항 6개소를 함께 묶어 제안하였다.⁷⁸⁾ 공산군은 병력 교체 제안만 받아들였고 다시 출입항 개수로 5개소를 제안하였다.⁷⁹⁾ 하지만 유엔군은 병력 교체 수를 양보했기 때문에 출입항 개수로 6개소로 결정되길 원하였다.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고 3월까지 이어졌다. 결국, 논의 끝에 중립국 대상국 선정 문제로 유엔군은 1952년 3월 16일 출입항 개수를 5개소로 양보하였다.

출입항 개수 문제에서 쌍방의 최대양보선을 판단하자면, 공산군은 유엔군이 출입항 개수를 7개소로 제안했을 때부터 양보하기 시작하였다. 즉 공산군의 최대양보선은 7개소였다. 다만, 유엔군은 공산군이 양보하기 이전에 먼저 양보하기 시작하였다. 유엔군은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유엔군이 끝없이 양보만 하진 않았다. 유엔군은 출입항 6개소까지 양보한 뒤에 개수를 더 줄여서 제안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지막에 유엔군은 중립국 대상국 선정 문제로 출입항 5개소에 합의하였다. 즉, 유엔군의 최대양보선은 쌍방이 합의한 5개소였다. <그림 3>과 같이 공산군은 지도부의 지시부터 시작하여 출입항 1~2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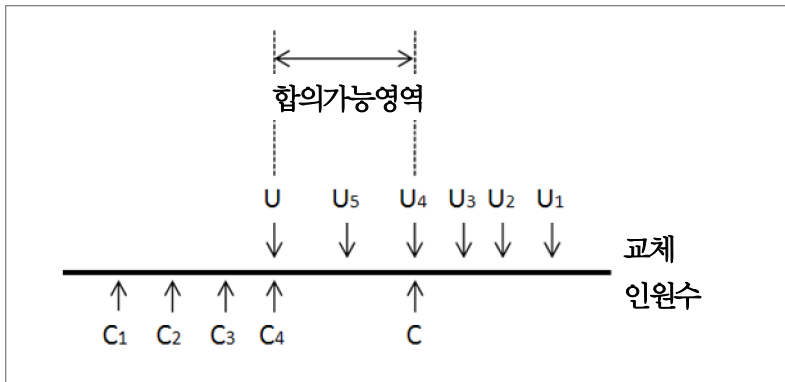
77) Twenty-third Meeting of Staff Officers on Details of Agreement of Agenda Item 3, Held at Pan Mun Jom, 19 February 1952. *Ibid.*, pp. 370-380.

78) Twenty-fourth Meeting of Staff Officers on Details of Agreement of Agenda Item 3, Held at Pan Mun Jom, 20 February 1952. *Ibid.*, pp. 381-389.

79) Twenty-fifth Meeting of Staff Officers on Details of Agreement of Agenda Item 3, Held at Pan Mun Jom, 22 February 1952. *Ibid.*, pp. 399-403.

(C1)에서 3개소(C2)에서 4개소(C3), 5개소(C4)로 양보하였고, 유엔군은 지도부의 지시부터 시작하여 출입항 23개소(U1)에서 10개소(U2), 8개소(U3), 7개소(U4), 6개소(U5)로 양보하였다. 공산군의 최대양보선은 C(=U4)지점이었고, 유엔군의 최대양보선은 U(=C4)지점이었다. 따라서 합의가능영역은 출입항 5개소부터 7개소로 아래 표시한 영역과 같다.

〈그림 3〉 출입항 개수 관련 유엔군과 공산군의 합의가능영역



* 출처 : 『남북한관계사료집』 6권의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 (U: 유엔군, C: 공산군)

마지막으로 쌍방은 한국과 북한의 5개소 출입항의 장소를 선정하고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만 남겨두었다. 유엔군은 북한 지역에 신의주, 청진, 함흥(홍남과 비행장 포함), 만포진, 평양(진남포 항구와 평양 비행장 포함)과 한국 지역에 서울(인천 항구와 비행장 포함), 강릉(양양 항구와 비행장 포함), 군산, 대구, 부산(마산 항구와 비행장 포함)을 제안하였다.⁸⁰⁾ 공산군이 도시명만 말하며 구체적인 범위를 말하지 않고 애매하게 넘어갔던 것에

80) Fiftieth Meeting of Staff Officers on Details of Agreement of Agenda Item 3, Held at Pan Mun Jom, 17 March 1952. *Ibid.*, pp. 586-594.

비해 유엔군은 명확한 지점과 더불어 주변 출입항으로 활용될만한 항구와 비행장 시설을 모두 포함하였다. 출입항 위치가 모두 결정되자 쌍방은 1:50,000 지도를 이용하여 구역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정해진 출입항의 비행장, 항구의 위치와 이를 이어주는 주요 교통로를 알려주었고 모두 지도에 표시하였다. 이들은 1952년 3월 26일까지 해당 지역의 위도와 경도를 적었고 서로가 표시한 지도를 오버랩시키면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확인했고 조정해 나갔다.

나. 중립국 논쟁과 일괄타결안

1) 중립국 논쟁

지금까지 쌍방의 제3 의제 논쟁 사항을 확인하였다. 쌍방은 논쟁 사항 대부분을 해결하였고 제2장(Article II)에 들어갈 전 반적인 내용을 대부분 작성하였다. 이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감시기구를 구성하는 중립국의 대상에 관한 논의였다.

앞서 중립국 감시기구 논의가 본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진행되었다. 하지만, 쌍방은 중립국으로 어떤 국가를 선정할지 논의하지 않았다. 공산군은 본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유엔군의 요청에도 중립국으로 어느 나라를 희망하는지를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산군 지도부는 사전에 중립국 대상국으로 소련, 폴란드, 인도를 염두에 두었다.⁸¹⁾ 미 합참은 협상단에게 만약 공산군이 중립국 대상국으로 소련을 선택한다면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전달하였다.⁸²⁾ 소련은 실제 스탈린의 지도하에

81) 1951년 11월 19일 마오쩌둥은 리커닝에게 5가지 원칙을 하달하였다.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앞의 책, pp. 328-330.

82) 슈나벨, 왓슨, 앞의 책, p. 150.

전쟁을 지도했고, 소련 공군은 전투기의 국적표식을 바꿔 달며 6·25전쟁에 참여하였다.⁸³⁾ 소련은 유엔군이 중립국 대상국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국가였다. 공산군도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임을 알고 있어서 중립국 대상을 밝히지 않았다. 본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중립국 대상국 선정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참모장교 회의가 시작된 후 약 20일 후인 1952년 2월 16일 드디어 공산군은 소련,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를 중립국 대상국으로 지명하였다. 이날을 기점으로 3장에서 언급했던 병력 교체 문제는 거의 해결되었던 상태이고, 해양 영역 문제는 해결되었던 상태였다. 또한, 앞서 감시기구의 지휘 관계 및 구성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 외 문제들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공산군은 비로소 중립국 대상국을 공개하였다.

이때 공산군이 중립국을 소련으로 제안하면서 참모장교 회의의 관심 주제가 중립국 선정 문제로 바뀌었다. 공산군은 양립할 수 없는 주제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제안을 가져왔다. 이는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논의했던 사항들의 중요도를 떨어뜨렸다. 그 결과 공산군이 협상에서 주도권을 가져갔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중립국 대상국을 밝힌 1952년 2월 16일을 기점으로 이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군사력 교체 인원수와 출입항 개수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중립국 선정 논의에서 공산군은 소련 선택의 정당성을 강조하였다. 유엔군이 제시한 협정문 제38항에 6·25전쟁에 참여하는 국가를 중립국으로 선택 가능하다고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⁸⁴⁾ 즉, 공산군은 소련이 전쟁에

83) 김보영, 앞의 논문, pp. 138-139.

84) Twenty-second Meeting of Staff Officers on Details of Agreement of Agenda Item 3, Held at Pan Mun Jom, 18 February 1952. 국사편찬위원회, 『남북한관계사료집』 6권, pp. 363-368.

참여하지 않은 국가이기에 선택 가능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와 반대로 유엔군은 쌍방에 의해 합의된 중립국으로 감시기구를 구성하는데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되지 못한 국가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⁸⁵⁾ 즉, 유엔군은 서로에 의해 합의되지 않은 국가를 선택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결정적으로 유엔군은 6·25전쟁에 소련이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참전했다고 판단했기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⁸⁶⁾ 하지만, 유엔군은 이를 이유로 반대할 수 없었다. 당시 유엔군 지도부는 소련의 참전에 대한 증거의 실체를 제시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반대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⁸⁷⁾ 만약 정확한 증거 없이 소련의 중립국 제안을 반대한다면 오히려 이것으로 다시 논쟁이 벌어져 협상이 지연되었을 것이었다. 결국, 중립국 선정 문제는 참모장교 회의에서 해결되지 못하였다. 이는 본회의로 넘어갔고 제3의제 참모장교 회의가 끝이 났다.

참모장교 회의에서 진행한 중립국 대상국 선정 논의에서 아무런 소득이 없진 않았다. 소련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유엔군은 소련을 제외하고 유엔군이 제시한 중립국 대상국에서 한 개 국가를 제외하여 총 4개 국가로 중립국 대상국을 선정하자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추후 정전협정문에 반영되었다.

85) Twenty-third Meeting of Staff Officers on Details of Agreement of Agenda Item 3, Held at Pan Mun Jom, 19 February 1952. *Ibid.*, pp. 378-379.

86) 당시 미 합참은 정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후에 자료를 통해 소련이 6·25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51년 3월 4일 스탈린이 마오쩌둥에게 보낸 자료를 통해 소련 2개 공군 전투사단인 제151사단과 제324사단을 북한으로 이동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명섭, 앞의 책, pp. 416-417.

87) 슈나벨, 왓슨, 앞의 책, p. 151.

2) 유엔군과 공산군의 일괄타결안

제3 의제에서 참모장교 회의는 <표 4>와 같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였다. 하지만, 참모장교 회의에서도 각자 쌍방 지도부의 강한 의지가 담긴 항목이자 물리칠 수 없는 가치의 문제까지 해결하진 못하였다. 참모장교 회의의 마지막 날인 1952년 4월 2일 까지 참모장교 회의는 비행장 복구 및 증설과 중립국 대상 선정 을 해결하지 못하였다. 이 두 가지 문제와 더불어 제4 의제인 포로송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표 4> 제3 의제 본회의, 분과위원회 회의, 참모장교 회의의 결과

구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회의	참모장교 회의
1번	· 문제해결 사항 없음	· 병력 교체 가능	· 병력 교체 매달 3만 5,000명, 장비 및 탄약 조건부 교체 가능 · 비행장 복구 및 증설 문제 해결하지 못함
2번	· 문제해결 사항 없음	· 문제해결 사항 없음	· 전쟁 이전 통제하던 도서와 영해 통제 (유엔군 서해 5도 통제) · 그 외 38도선 이북의 연안 도서 및 영해에서 병력 철수
3번	· 문제해결 사항 없음	· 비무장지대 내/외부 감시기구 추체 결정 ·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시기구 지휘 관계 결정 · 지상정찰만 수행	· 합동감시팀 개수 · 중립국 감시기구팀의 개수 · 출입항의 개수 · 출입항의 위치 · 감시 범위
4번	· 문제해결 사항 없음	· 문제해결 사항 없음	· 문제해결 사항 없음 · 다만 중립국 대상국 선정에 관한 쌍방 의견 교환
협상 전략	· 대립전략	· 대립전략	· 문제해결전략
양보	· 양보 없음	· 받아들일 수 없는 양보	· 받아들일 수 있는 양보

* 출처 : 『남북한관계사료집』 2권, 4권, 6권의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 (U: 유엔군, C: 공산군)

* 1번: 군사력 증강 및 감소, 2번: 해양 영역, 3번 정전감시기구 및 감시방법, 4번: 중립국 선정

1952년 4월 28일 본회의에서 유엔군은 제3 의제뿐 아니라 제 4 의제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한꺼번에 합의하여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 일괄타결안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공산군의 뜻대로 비행장 복구 및 증설을 허용하는 대신 중립국으로 소련군의 지명을 취소하고 포로송환에 있어서 자원송환원칙을 전제한 송환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공산군이 비행장 복구 및 증설에 관한 사항 외 2가지를 양보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공산군은 역으로 일괄타결안을 제시하였다.

1952년 5월 2일 공산군은 중립국으로 소련 대신 쌍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2개 국가씩 선정한 스위스, 스웨덴,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를 지명하고, 자신들의 의지대로 전체 포로송환과 비행장 복구 및 증설 등에 관해 상대방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자는 제안을 제시하였다. 이 역시 유엔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의 정전회담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5월 하순부터 3일씩 휴회가 이루어졌고, 심지어 7월 하순부터 1주일간 휴회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⁸⁸⁾

유엔군의 일괄타결안과 공산군의 역제안을 살펴보면, 중립국 선정 문제는 공산군이 충분히 양보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 이들은 소련이란 중립국 카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원하던 비행장 복구 및 증설 문제와 포로송환 문제에서 이를 활용하려 하였다. 비행장 복구 및 증설 문제는 유엔군이 양보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가장 큰 이유는 스탈린의 죽음이었다.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던 포로송환 문제가 해결되었고, 정전협정

88) 국사편찬위원회, 『남북한관계사료집』 2권;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앞의 책, pp. 401-402.

이 체결되었다. 하지만, 스탈린의 죽음뿐 아니라 정전회담 협상 대표단의 역할도 컸다. 유엔군과 공산군의 협상 대표단은 본회의, 분과위원회 회의, 참모장교 회의에서 정전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들이 노력하지 않았다면 협정문의 내용은 사전에 작성되지 않았을 것이고, 스탈린의 죽음 이후에 뒤늦게 다시 협정문을 작성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협상을 다시 시작하여 완성하는데 시간이 지체되었을 것이고 쌍방 병력의 피해가 커졌을 것이다. 또한, 급하게 작성한다 해도 협정문의 완성도가 떨어질 것이고, 한 항목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하여 정전협정 이후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었다. 즉, 정전회담 내 각 회의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5. 결 론

6·25전쟁 정전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유엔군과 공산군은 본회의, 분과위원회 회의, 참모장교 회의, 연락장교 회의를 통해 자신들이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가 담긴 제안을 전달했고 협상으로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자 했으며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논리적인 주장을 펼쳤다. 쌍방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주요 결정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각 회의의 역할 또한 중요하였다. 그중 참모장교 회의는 본회의를 준비하고 협정문의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하고 합의문 문구를 오역하지 않도록 서로를 이해시키고 타결되지 못한 부분을 해결하며 정전협정을 타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본 논문은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참모장교 회의의 역할을

재조명하였고 그중 정전협정문의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하면서 본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타결하지 못한 항목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본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유엔군과 공산군은 대립전략을 유지했고, 서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최초제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양보를 제안하였다. 자연스럽게 협상에 진전은 없었다. 서로 간 문화와 이념의 차이로 서로가 양보 없는 의견만 반복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참모장교 회의가 열리며 좁혀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제3 의제인 정전감시방법 및 그 기구의 설치 논의에서 참모장교 회의가 이전에 해결하지 못한 병력 교체와 해양 영역 결정 문제를 해결하였다. 참모장교 회의를 통해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양보를 하기 시작하면서 극명하게 존재했던 병력 교체 인원수에 대한 차이를 해결하였고 교체할 때 오해할 수 있는 수송 및 지원 근무자를 포함할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정전회담에서 언급하지 않으면 정전협정이 이루어진 뒤 문제가 생길 해양 영역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참모장교 회의가 제3 의제에서 논의해야 할 정전감시방법 관련 문제도 해결하였다. 이들은 정전감시방법으로 출입항 개수를 결정하고 세부적으로 그 범위까지 논의하여 추후에 발생할 문제를 최소화시켰다. 연구 결과로 본 논문은 기존 연구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유엔군과 공산군이 최초 결정했던 제안에서 양보하기 시작한 지점을 바탕으로 쌍방의 합의가능영역을 추정하여 양보하기 시작한 지점, 서로에게 존재했던 차이를 좁혀나가는 지점을 추정해 보았고 참모장교 회의에서 그 역할을 했음을 분석하였다.

2023년은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이다. 동시에 세계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동안 진행되고 있다. 이 전쟁은 단순히 두 나라만 관계된 것이 아니다. 세계는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두 세력으로 나누어졌고, 이 상황이 악화된다면 자칫 두 세력을 지원하는 국가 중 한 국가가 참전하게 되면서 더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지 않기 위해 정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유엔군과 공산군이 참가한 6·25 전쟁, 그중에서 정전회담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공산군 자료의 사료 부족으로 정전회담 진행 간 쌍방 지도부, 협상단 내부의 결정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하지 못하였다. 유엔군이 작성한 정전회담 회의록뿐 아니라 공산군이 작성한 회의록 내용과 내부 결정 과정을 확인한다면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사료

- 국사편찬위원회. 『남북한관계사료집』 1권.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94.
<http://uci.or.kr//G901:A-0008458533@N2M>
- _____. 『남북한관계사료집』 2권.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94.
<http://uci.or.kr//G901:A-0008458533@N2M>
- _____. 『남북한관계사료집』 3권.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94.
<http://uci.or.kr//G901:A-0008458533@N2M>
- _____. 『남북한관계사료집』 4권.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94.
<http://uci.or.kr//G901:A-0008458533@N2M>
- _____. 『남북한관계사료집』 6권.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94.
<http://uci.or.kr//G901:A-0008458822@N2M>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FRUS 1951, Vol. VII, Part 1.
Washington, D.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3.

2. 저서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9권.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
연구소, 2012.
- _____. 『6·25전쟁사』 10권.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
연구소, 2012.
- 김명섭.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 서울: 서강대
학교출판부, 2015.
<http://uci.or.kr//I410-ECN-0102-2017-910-000553726@N2M>
- 김학준. 『한국전쟁: 원인, 과정, 휴전, 영향』. 서울: 박영사, 2010.
<http://uci.or.kr//G901:A-0008485812@N2M>
- 바르타노프 편. 『해외사료총서11』.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 역. 경기:
국사편찬위원회, 2006.

- 슈나벨, 왓슨. 『한국전쟁』 상.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역.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91.
- 양쿠이승. “중국군의 정전협상전략”. 『6·25전쟁 50주년기념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http://uci.or.kr//G901:A-0006017912@N2M>
- 윌리엄 스톡. 『한국전쟁의 국제사』. 김형인 역. 서울: 푸른역사, 2001.
<http://uci.or.kr//G701:B-00047961565@N2M>
- 이달곤. 『협상론: 협상의 과정, 구조, 그리고 전략』. 경기: 법문사, 2007.
<http://uci.or.kr//G901:A-0008424238@N2M>
-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7권. 서울: 국방부, 1974.
- 조이. 『공산주의자는 어떻게 협상하는가?』. 김홍열 역.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3.
<http://uci.or.kr//G701:B-00092116411@N2M>
-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권. 한국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http://uci.or.kr//G901:A-0006044432@N2M>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서울: 세경사, 1991.
<http://uci.or.kr//G701:B-00047874288@N2M>
- 합동군사대학교. 『합동작전 용어해설집』. 서울: 합동군사대학교, 2014.
- 허만호. 『6·25전쟁 휴전회담과 역사적 유제들』. 경기: 한국학술정보, 2017.
- 허미스.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육군본부 역. 계룡: 육군본부, 1968.
- Charles Turner Joy, How Communists Negotiate. New York: The Macmillian Co, 1955.
<http://uci.or.kr//G901:A-0008539109@N2M>
-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Washigton D.C: United States Army, 1988.
<http://uci.or.kr//G901:A-0008581503@N2M>
- James F. Schnabel and Rovert J. Wastson, The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te, Vol.Ⅲ The Korean War Part II. Washington D.C.: Historical Division Joint Secretariat

Join Chiefs of Staff, 1979.

Matthew B. Ridgway, *The Korean War*.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67.

Rosemary Foot, *A Substitute For Victory: The politics of Peacemaking at the Korean Armistice talks*.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90.

<http://uci.or.kr//G901:A-0008556823@N2M>

Victor A. Kremeyuk et al., *International Negoti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2013.

3. 논문

김보영. “한국전쟁 휴전회담 연구”. 한양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8.

<http://uci.or.kr//G901:A-0005394079@N2M>

허만호. “6·25전쟁 휴전회담 분석”. 『국제정치논총』 53집 4호, 2019.

<http://uci.or.kr//I410-ECN-0101-2015-340-001057352@N2M>

4. 기타

해양수산 용어사전. 연안.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949417&cid=67003&categoryId=67003>. (검색일: 2023년 4월 6일)

(Abstract)

A Role of Staff Officers in the Korean War Armistice Conference

Kim, Jeong-Hun

This study analyzes the importance of the Meeting of Staff Officers from November 1951 to April 1952 during the Armistice Conference. This study analyzed the role of the Staff Officers Meeting and the achievements of the Staff Officers Meeting in the process of the Armistice Conference focusing on the third agenda.

Existing research has only shown fragmentary results that the meeting of staff officers has helped conclude the armistice agreement. In addition, Existing research focus only on the decision process of the leadership in which the armistice agreement is concluded, or on the establishment of the second agenda military demarcation line and consultation on the fourth agenda prisoner. Discussions on the maritime area that were not resolved in the second agenda were also held in the third agenda. Moreover, when the issue of prisoners, the fourth agenda, was not solved, it was discussed in conjunction with the issue related to the third agenda. Discussions on the third agenda are important but have not been noticed. Especially, the Staff Officers Meeting played an important role in resolving the issues arising from the Third Agenda, but it did not draw attention. Of course, Stalin's death was the biggest reason for the resolution, but without the role of the Staff Officers Meeting, it would have taken longer for the armistice to be concluded even after Stalin's death or the completeness of the agreement would have been reduced.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focuses on what the issues of the third agenda, what each other claimed, what they wanted, and how they solved the problem, focusing on the minutes of the armistice

talks. As a result, the items that were at issue in the third agenda discussion were classified and the consensus area for each item was derived. And through constant meetings of UN and Communist delegations, it was found that the meeting of staff officer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conclusion of the armistice agreement.

Keywords : Korea war Armistice Conference, Staff Officers Meeting, The third item, Armistice monitoring method, Armistice monitoring target